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0년 7월 1일부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등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된 바, 동작구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서울동작재향경우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향경우회 지원 목적을 명시(안 제1조)
- 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재향

경우회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예산 지원된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구청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보조금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신청, 교부방법, 실적보고,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